

고 시

●서울특별시 양천구고시 제2016-80호

목제1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

1.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4-22호(2014. 3.20)로 사업시행인가, 양천구 고시 제2015-30호(2015.06.18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632-1번지 일대 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8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16년 11월 17일

양 천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
나. 명 칭 : 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632-1번지 일대

나. 면 적 : 24,519.5㎡(택지: 17,996.5㎡, 정비기반시설: 6,523㎡)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 : 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이광원)

나. 주 소 :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55길 6(등촌동) 3층

4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: 2016년 11월 14일

5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
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대지면적 (㎡)	건축면적 (㎡)	건폐율 (%)	연면적 (㎡)	용적률 (%)	층 수 (지상/ 지하)	높이 (m)	용 도	비고
17,996.5	5,010.88	27.84	63,003.92	217.11	14/3	42	공동주택 (아파트:410) 및 부대복리시설	

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공급대상	주택규모별(전용면적기준)공급세대수(m^2)					
	계	59A	59B	77	84	101
계	410	101	119	16	158	16
토지등소유자	138	37	28	16	47	10
보류시설	4		4			-
일반분양	268	64	87		111	6

주) 1. 공동주택 개별 동호수는 전산추첨을 통해 추후 결정함(규모별 면적=전용+주거공용+기타공용)

다. 보류지 처분변경 (보류지 4세대 → 0세대 : 일반분양 처리)

6. 변경사유

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수입 및 총사업비 변동으로 인한 추정비례율 변동으로 인하여 분양대상자 청산액 변경 등

7.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양천구청 주택과(2620-3526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